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3년 2월 22일

CUOMO 주지사, 재무 서비스부가 수금 대행업체에게 불법적인 초단기 사금융을 금지하도록 통지했다고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재무 서비스부가 뉴욕의 모든 수금 대행업체에게 서신을 발송하여 초단기 사금융과 같은 대출은 뉴욕에서 불법이므로 그러한 방법으로 수금하려는 것은 불법임을 알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초단기 사금융은 뉴욕의 형사적 고리대금법을 위반하는 25%라는 극히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며 급여를 담보로 하는 단기 대출입니다. 연간 수수료를 고려할 때 이 이자율은 40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오늘 통지문은 뉴욕의 수금 대행업체에게 뉴욕에서 그러한 수금 행위는 불법임을 재인식시켜주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단기 사금융은 저소득층에게 해결책이 아니라 비싼 부채의 덫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뉴욕에서는 그러한 행동이 불법이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을 그러한 대출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정 서비스부의 Benjamin M. Lawsky씨는 "뉴욕의 모든 수금 대행업체는 초단기 사금융 채무를 상환 받으려고 하는 것은 불법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법을 적극 실행하여 모든 뉴욕 주민들과 특히 부도덕한 대부업자와 수금 대행업체들의 횡포에 쉽게 희생되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대부업자들은 기소를 피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해줌으로써 뉴욕의 초단기 사금융에 대한 단속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초단기 사금융은 뉴욕에서 직접 초단기 사금융을 해주는 것과 동일하게 불법적인 일입니다. 대출을 해주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더라도 불법적인 초단기 사금융은 유효한 대출이 아니며 합법적으로 수금할 수 없습니다. Lawsky 감독관의 서신은 수금업계에게 그러한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서신에는 "수금 대행업체는 주 및 연방법의 효력이 없거나 강제할 수 없는 채무를 징수하려고 시도해서는 안됩니다. 재무서비스부는 소비자가 초단기 사금융을 포함한 고리대금업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출업체와 수금 대행업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Korean

뉴욕의 AARP 책임자인 Beth Finkel은 “AARP는 뉴욕의 엄격한 법률을 집행하고 주민을 보호하려는 Lawsky 감독관의 조치를 크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초단기 사금융은 탐욕스러울 뿐만 아니라 수많은 뉴욕 주민에게 채무의 악순환을 안겨줄 뿐입니다. 이러한 대출은 뉴욕에서 불법이며 근절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Lower East Side People’s Federal Credit Union/PCEI, Inc.의 CEO인 Linda Levy는 "저렴한 소액 대출을 27년 동안 운영한 결과 우리는 초단기 사금융이 뉴욕주에서 불법이라는 것을 재인식했으며 앞으로도 모든 뉴욕 주민을 고금리 사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Robert A. Martin지역 위원회 37 Municipal Employees Legal Services, 부책임자는 “초단기 사금융은 뉴욕법을 위반하는 고금리로 근로자들이 채무가 악순환되는 덫에 빠지게 합니다. DFS 서신은 수금 대행업체가 뉴욕주의 주민을 상대로 그러한 불법적인 대출 상환하도록 징수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NYPIRG 법률 고문인 Russ Haven씨는 “Cuomo 주지사는 수금 대행업체가 뉴욕 주민들로부터 '초단기 사금융' 대출금을 받으려는 것에 대해 경고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지사와 재무서비스부는 뉴욕주의 고리대금법에 대한 '회피책'을 방지하고 소비자를 부도덕한 채무의 순환과 황폐한 상황에 빠지게 하는 잔인한 금융상품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은 엄청난 이자율과 수수료를 통해 경제회복을 저하시키고 미국의 최저 임금을 인상시킬 수 없도록 합니다.

Carolyn E. Coffey MFY Legal Services, Inc.의책임 변호사는 “불법적인 초단기 사금융으로 이득을 취하고 가난한 근로자를 착취하려는 수금 대행업체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DFS에게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NEDAP 변호사인 Susan Shin은 “Lawsky 감독관의 서신은 수금 대행업체와 초단기 사금융 업체들에게 뉴욕주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초단기 사금융에 대한 채무 징수는 뉴욕주에서 불법인데도 수금 대행업체는 초단기 사금융으로 저소득 뉴욕주민에게 체포한다거나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협박하면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에 관여하려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Empire Justice Center의 정책 옹호 책임자인 Kristin Brown Lilley씨는 “탐욕스러운 대부업체가 인터넷과 기타 방법으로 뉴욕 주민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재무서비스부의 서신은 이자율이 25%를 넘는 모든 초단기 사금융은 뉴욕주에서 불법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mpire Justice는 Lawsky 감독관이 불법적인 대출금 징수가 불가능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에 대해 크게 평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13년 2월 22일

제목: 뉴욕주의 모든 수금 대행업체에게 보내는 안내문:

이 안내문은 뉴욕주에서는 초단기 사금융을 포함하여 불법적인 고금리 대출에 대한 대출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것을 뉴욕에서 수금 대행업을 하는 모든 개인과 법인에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터넷과 전화 및 우편물을 통해 뉴욕에서 이루어진 불법적인 고금리 초단기 사금융이 포함됩니다. 뉴욕에서는 일반 채무법 § 5-501 및 은행법 § 14-1(1)에 따라 비은행권 대부업체 또는 비인가 은행이 연리 16% 이상의 이자율로 빌려준 $250,000 미만의 대출이나 지불유예는 민사적 고리대금이며 불법입니다. 또한 뉴욕 형사법 §§ 190.40-42에 따라 연리 25% 이상의 이자율로 빌려준 대출금은 형사적 고금리가 됩니다.

초단기 사금융은 민사 및 형사적 고리대금 조건에 따라 뉴욕주에서 불법입니다. 초단기 사금융은 급여 또는 다른 수입원을 담보로 하는 단기적 대출입니다. 수수료를 연간 단위로 계산하면 이자율은 극히 높아지며 400%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출은 고리대금업입니다.

일반 채무법 § 5-511의 규정에 따라 초단기 사금융을 포함하여 뉴욕에서 합법적인 상한을 초과하는 이자율로 뉴욕 인가 은행이나 비은행권 대부업체가 해준 대출은 피해야 하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수금 대행업체는 주 및 연방법의 효력이 없거나 강제할 수 없는 채무를 징수하려고 시도해서는 안됩니다. 재무서비스부는 소비자가 초단기 사금융을 포함한 고리대금업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출업체와 수금 대행업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Benjamin M. Lawsky
재무서비스부 부장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